# 순 천 시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1555호 2024, 4, 15.(월)

						**11 1 1	0001	•	LUL-1.	<b></b> .	
입 법	예고										
순천시	공고	제2024-	-886호						-개정조리		2
순천시	공고	제2024- 제2024- 제2024-	-904호	순천시 순천시 순천시	시세 김 시세 기 시세 기	면 조려 본 조려 본 조려	일부기    일부기    시행국	개정조례 개정조례 규칙 일	안 입법  안 입법	예고· 예고· 칙안	8 13
규	칙										
순천시 순천시	규칙 규칙	제977호 제978호 제979호 제980호	순천시 순천사 국가유	회계관i 랑상품권 산체제 2	리에 관 <sup>†</sup> ] 발행 <sup>†</sup> 전환을 <sup>‡</sup>	한 규칙 및 운영 위한 순	일부가 조례 / 천시 계	정규칙 시행규칙  약심사	전부개	정규 <sup>츠</sup> 기 규 <sup>츠</sup>	······· 33 싞 ···· 37 싞 등
순천시	규칙	제981호									
고	시										
순천시	고시	제2024-	-60호 <del>(</del> (	순천 도시 결정) 및	]관리계 및 지형5	획(구암 E면 승역	C지구 인 고시	지구단위	H계획) >	경미힌	· 변경 ······ 82
순천시 순천시	고시 농업)	제2024- 기술센터	농업정	책과 고/	·   제202	24-2호	순천시	주암 🖁	월봉 마을 <u>]</u> 고시 ··	을만들	기사업
공	고										
순천시	공고	제2024-							정(안) =		
순천시	공고	제2024-	-894호	0	그린공원	(19공원	·]) 조성	계획 결		)(안)	
회 람											
 발행 :	 순천 <i>.</i>	시			l	홍보실	( <del>2</del> 74	19–572	9. FAX	749	<del>-4625)</del>

# 입 법 예 고

순천시 공고 제2024-886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순 천 시 장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O 어울림도서관 건립 개관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도서관의 기능 및 서비스 활성화

#### 2. 주요 내용

- O (안 제4조) 어울림도서관 명칭 및 위치 신설에 관한 사항
  - 순천시 동천저류지길 37 (풍덕동)
- O (안 제5조) 어울림도서관 이용시간 신설에 관한 사항

- 열람실·자료실(평일·주말·공휴일) 09:00 ~ 22:00
- O (안 제12조) 어울림도서관 시설 사용료 신설에 관한 사항
  - 강당(50석) 1회(4시간) 40,000원, 1강의실(30석) 1회(4시간) 25,000원
-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5. ~ 2024. 5. 7.(22일간)

####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도서관운 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thakd750@korea.kr (팩스) 061-749-4714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도서관운영과(☎ 061-749-695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대도서관"을 "신대도서관. 어울림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열람실	자 료 실		
T		평일	토・일요일	
연향・조례호수도서관	08:00~22:00	09:00~22:00		
삼산 • 신대 • 어울림도서관	09:00~22:00			
해룡농어촌 • 풍덕글마루도서관	09:00~18:00			

#### 별표 1의 신대도서관란 다음에 어울림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우리드서과
1557/10
어울림도서관

#### 별표 3의 신대도서관란 다음에 어울림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울림 도서관	강당	50석	40,000	100,000	프로젝트, 음향
	1강의실	30석	25,000	60,000	전자칠판, 음향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제4조(도서관의 설치 등) ① 도서관 제4조(도서관의 설치 등) ①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산 도서관, 그림책도서관, 연향도서 관, 기적의도서관, 조례호수도서 관, 해룡농어촌도서관, 풍덕글마루 도서관, 신대도서관을 둔다.

혅

행

#### ② ~ ④ (생 략)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 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여러시	자료실		
一	열람실	평일	토· 일요일	
<b>삼산</b> ·연향·조례호수· <b>신대도서관</b>	08:00~22:00	09:00~22:00		
해룡농어촌·풍덕글마루 도서관	09:	00~18:00		

####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삼산도서관	순천시 중앙로 232(석현동)			
:	:			
:	:			
신대도서관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71			
<신 설>				

#### 개 정 안

<b>州4年(エハゼイ ヨハ 6) ①</b>
신대도서관, 어울림도서관
<b>.</b>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시간)	

구 분	열람실 열람실	자료실		
T T	- 클럽건 -	평일	토·일요일	
연향 • 조례호수도서관	08:00~22:00	09:0	0~22:00	
삼산·신대·어울림도서관	09:00~22:00			
해룡농어촌 · 풍덕글마루 도서관	09:00~18:00			

####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삼산도서관	(현행과 같음)
:	:
:	:
신대도서관	(현행과 같음)
어울림도서관	순천시 동천저류지길 37(풍덕동)

현	행	개	정	ó}
Ľ	0		0	Ľ

[별표 3]

[별표 3]

####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표(제12조 관련)

사용기준	사용시간	비고
오전	09:00 ~ 13:00	
오후	14:00 ~ 18:00	
야간	18:00 ~ 22:00	
1일	09:00 ~ 22:00	

※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도서관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도서관별	ग्रीक्षण	규 모	사 용	豆	비고
조시선절	시설명	1회(4시간)		1일	비고
	시청각실	계단식 객석90석	70,000	18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삼산도서관	1강의실	80석	50,000	13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802010	2강의실	50석	40,000	100,000	전자칠판, 음향
	3강의실	20석	20,000	50,000	
	동아리방	10석 내외	15,000	40,000	
:	:	:	:	:	:
	강당	120명	80,000	200,000	프로젝트, 음향
	극장		25,000	60,000	프로젝트, 음향
신대도서관 1강	1강의실	40석	30,000	8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2강의실	20석	20,000	5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u><신설></u>

사용기준	사용시간	비 고
오전	(현행과 같음)	
오후	(현행과 같음)	
야간	(현행과 같음)	
1일	(현행과 같음)	

도서관 시설 사용시간표(제12조 관련)

※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도서관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도서관별	시설명 시설명	   규 모	사 선	용 료	비고
고기단권	\\.fe.9	11 3-	1회(4시간)	1일	H 12
	시청각실	계단식 객석90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삼산도서관	1강의실	80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622/12	2강의실	50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강의실	20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동아리방	10석 내외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강당	120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1-1-1	극장	계단식 객석52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대도서관	1강의실	40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강의실	20석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어울림	어울림 강당		40,000	100,000	프로젝트, 음형
도서관	<u>1강의실</u>	30석	25,000	<u>60,000</u>	전자칠판, 음형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O 성명(단체명):

O 주 소:

O 연 락 처:

기의비그 개 0		찬성	여부		તો ઋ	ען דו
자치법규 내용	찬	성	반	대	의 견	비고

순천시 공고 제2024-903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재 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O (안 제6조의3)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 신설
  - (법) 5년간 100% 재산세 면제 + <u>(조례) 추가 5년간 50% 감면</u> 확대

- O (안 제8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
-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5. ~ 2024. 5. 7.(23일간)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antlion6362@korea.kr (팩스) 061-749-4621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061-749-6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조례로정하는 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를 각각 "자동납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_〈신 설〉_	제6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
	<b>에 대한 감면)</b> 법 제80조의2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5년
	간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	제8조(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u>액공제)</u>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①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과 같다.	<u>.</u>
1.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1
신청하거나 <u>자동이체</u> 방식에 의	<u>자동납부</u>
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b>자동이체</b> 방식	2 <u>자동납부</u>
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O 성명(단체명):

O 주 소:

O 연 락 처:

ગુરામાં ગા ા ૦	찬성 여부				ما	겨	ם ט
자치법규 내용	찬	성	반	대	의	견	비고

2024. 4. 15(월)

순천시 공고 제2024-904호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 순 천 시 장

###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O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舊 중가산금)가 면 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준금액이 국세 개정사항, 물가·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방세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O (안 제5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 상향
  -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
-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5. ~ 2024. 5. 7.(23일간)

#### 4. 의견제출

- O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세정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antlion6362@korea.kr (팩스) 061-749-4621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061-749-6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서류송달의방법) ① 법 제30조	제5조(서류송달의방법) ①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	
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	
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	
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	
이 <u>30만원</u>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u>45만원</u>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O 성명(단체명):

O 주 소:

O 연 락 처:

기의비그 110		찬성	여부		તો ઋ	ען דו
자치법규 내용	찬	성	반	대	의 견	비고

순천시 공고 제2024-905호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 순 천 시 장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개정 및「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 산금 규정이 폐지되고「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O (안 제4조, 안 제11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
- O (안 별지 제7호서식)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가산금"란을 "납부지연가산세"란으로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5. ~ 2024. 5. 7.(23일간)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세정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메일) antlion6362@korea.kr (팩스) 061-749-4621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061-749-6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가산금"란을 "납부지연가산세"란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	
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	
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u>지방세정보통신망</u> 등을 통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	
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	
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	
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 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	<u> 기중계중합경포공건경</u>
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	
으로 본다.	
 [별지 제7호서식]	[배기 제7호 1] 시]
	[별지 제7호서식]
■ [전체 제7호에서]  지방세환급급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지방세환급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지방세환급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지방세환급 내 열리 지방세환 설립 기업 제업	■ (జెగ గెడుగు)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1864년 1872년 1882년 18
Del   CE   NX	Total   Tota
/ / = = = = = = = = = = = = = = = = = =	192
\$1 9EN 9EN	\$19 653 \$40
주는 기상에 환경을 본당이 처음 기업으로에 많다는 나가면 함께 가는 N 문에 기상에 가면 이 전에 가장이 되었다. 그 전에 되었다. 그	국은 기업체원으로 선택적 변경적 등 4 대 기준은 함께 보내는 업기준은 함께 기준이 가입니다면 전혀 전혀 기준은 경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994 924 924
대 전신하지만한 경우 전나으로 열심한 가장을 사용할 수 있을 364mm 207mm(학생지 500 H)	(유 전상조리하는 경우 전상으로 받으면 이장을 사용한 수 있을 384cm×297mm(현상조 80g)*)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O 성명(단체명):

O 주 소:

O 연 락 처:

ગુરામાં ગા ા ૦	찬성 여부				ما	겨	ם ט
자치법규 내용	찬	성	반	대	의	견	비고

순천시 규칙 제977호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15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조례"라 함은"을 ""조례"란"으로,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를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규칙"이라 함은"을 ""규칙"이란"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훈령"이라 함은"을 ""훈령"이란"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예규"라 함은"을 ""예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원안"이라 함은"을 ""원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원본"이라 함은"을 ""원본"이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중 "제정한 「법령용어 정비 요강」"을 "발간한 법령입안심사기 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나목 중 "순천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시의회 부의안건"을 "홈페이지에 시의회 제출안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제33조제2항 중 "작성 국·소·단장의 결재를 받아"를 "작성하여"로, "5일이내에 예산실"을 "10일이내에 예산실과 행정심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송수행자"라 함은"을 "'소송수행자"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송대리인"이라 함은"을 "'소송대리인"이라"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송담당자"라 함은"을 "'소송담당자"라"으로 한다.
- 제39조 중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 예규)"을 "법령입안심사기준"으로 한다.

제10조제7호, 제13조제8호,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3호, 제30조제5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u>(용어의 정의)</u> 이 규칙에서	제3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u>	뜻은 다음과
<u>호와</u> 같다.	
1. <u><b>"조례"라 함은</b></u> 헌법에 규정된	1. <u><b>"조례"란</b></u> 헌법에 규정된 <u>자치</u>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
<u>범위안에서</u> 시의 권한에 속하는	<u>서</u>
사무에 관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b>.</b>
2. <u>"규칙"이라 함은</u> 순천시장(이	2. <u>"규칙"이란</u> 순천시장(이하 "시
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	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
는 조례가 위임한 <u>범위 안에서</u>	가 위임한 <u>범위에서</u>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	
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	
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	
한다.	
3. <u><b>"훈령"이라 함은</b></u> 시장이 하급	3. <u><b>"훈령"이란</b></u> 시장이 하급기관에
기관에 대하여 감독권의 <u>범위안</u>	대하여 감독권의 <u>범위에서</u>
<u>에서</u>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4. <u>"예규"라 함은</u> 시장이 행정사	4. <u>"예규"란</u>

현 행	개 정 안
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	
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처리기	
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을 말하	
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5. <u><b>"원안"이라 함은</b></u> 조례·규칙·	5. <b>"원안"이란</b>
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등"	
이라 한다)의 입안서류에 대하	
여 시장이 결재를 한 문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	
6. <u><b>"원본"이라 함은</b></u> 조례 규칙의	6. <u>"원본"이란</u>
공포문과 훈령・예규의 발령문	
으로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제4조(자치입법체제 및 용어) ①	제4조(자치입법체제 및 용어) ① -
자치법규 등의 입안시 입법체제	
및 용어 등은 법제처에서 <u>제정한</u>	<u>발간한</u>
<u>「법령용어 정비 요강」</u> 에 따른다.	법령입안심사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자치법규등의 처리절차) ①	제5조(자치법규등의 처리절차)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조례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	②
의 순서에 <u>의한다</u> .	<u>따른다</u>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시의회 제출	8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예산실장은 이를 <u>순천시시</u>	나 <u>홈페이지에</u>

혀 행 개 정 안 시의<u>회 제출안건</u>-----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시의회 부의안건으로 공고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③ 규칙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 | ③ ------의 순서에 의한다. ----- 따른다. 1.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6호는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용한다. 규정을 준용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훈령 • 예규의 처리절차는 다음 (4)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 따른다. 1.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6호는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용한다. 규정을 준용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조례ㆍ규칙의 규정사항) ① 제6조(조례ㆍ규칙의 규정사항) 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례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 령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은 예외 로 하다.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 8. 그 밖에 ------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개별법령에서 규칙으로 4.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14조(예고의 예외) 예고사항중	제14조(예고의 예외)	
다음 <u>각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	<u>각 호의 어느 하나</u>	
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입법내용의 성질, <u>기타</u> 사유로	4 <u>그 밖의</u>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		
기가 곤란한 경우		
제32조(질의제외 대상) ① 다음 <u>각</u>	제32조(질의제외 대상) ① <u>각</u>	
<u>호의 1</u>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	호의 어느 하나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기타</u> 법령질의 내용이 될 수 없	5. <u>그 밖에</u>	
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의 유		
권해석이나 판례등이 정립되어		
있는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행정심판) ① (생 략)	제 <b>33조(행정심판)</b>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 과・소장은 답변서를 <u>작</u>	② <u>작</u>	
성 국·소·단장의 결재를 받아	<u>성하여</u>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일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일부터 <u>5일</u>	부터 <u>10일 이내에 예산실과 행정</u>	
<u>이내에 예산실</u> 로 제출하여야 한다.	<u>심판위원회</u>	
③ 예산실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	<u>&lt;삭 제&gt;</u>	
료를 검토하여 행정심판 접수일		

현 행	개 정 안
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송	
부하여야 하며, 행정심판 청구인	
에게도 도지사에게 송부한 사항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산실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	4
련 과·소, <u>기타</u> 기관에 필요한	<u>그 밖의</u>
서류제출이나 의견진술 또는 보고	
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소송담당) ① (생 략)	제35조(소송담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의한 소송수행자등에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등에
대한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호와</u>	대한 용어의 <u>뜻<b>은 다음과</b></u>
같다.	
1. <u>"소송수행자"라 함은</u> 국가소	1. <u>"소송수행자"란</u>
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	
송) 및 행정소송(시장을 당사	
자로 하는 소송) 사건을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	
2. <b>"소송대리인"이라 함은</b> 민사	2. <b>"소송대리인"이란</b>
소송(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b>"소송담당자"라 함은</b> 민사소	3. <b>"소송담당자"란</b>
송 사건중 변호사를 소송대리	
인으로 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u>.</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	제39조(준용규정)

현 행	개 정 안
되지 아니한 자치입법에 관한 사	
항은 <u>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u>	법령입안심사기준
<u>예규)</u> 을 준용한다.	

순천시 규칙 제978호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15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리 사 거 비	합의대상금액			
대 상 경 비 국 장		과 장	팀장	
공사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00만원 초과	
용역 또는 물품제조·구매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00만원 초과	
시책추진 또는	_	_	50만원 이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0 2 2 7 0	
민간위탁경비	_	_	전액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_	_	전액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_	_	전액	
설계서 또는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 하고자 하 는 경우	_	_	전액	
기타 경비	_	_	전액	

####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 계약담당팀장 및 회계과장 합의 후 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담당팀장 합의 후 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 계약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 ※ 업무의 성격상 2팀장 이상 관련이 있는 건은 담당팀장 모두의 합의를 받은 이후 합의대상금액에 따른 합의방법을 준수하여 과장 또는 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 ※ 재정합의 대상 제외 : 추정가격 2백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부서 자체 일반지출)

### 신 · 구조문대비표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 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행

혂

② (생략)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회계과장)	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 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 상여금, 포상금	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 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액	
8. 기타 경비	전액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개 정

제12조제3항----

아

② (현행과 같음)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합의대상금액	
नि व ४ ४ म	국장	과장	팀장		
공사	5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00만원 초과		
용역 또는 물품제조·구매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00만원 초과		
시추진 또는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	-	50만원 이상		
민간위탁경비	-	_	전액		
민간이전경비, 보조금,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	전액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	전액		
설계서 또규칙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 하과하는 경우	-	-	전액		
기타 경비	-	-	전액		

####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 계약담당팀장 및 회계과장 합의 후 국장의 합의 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담당팀장 합의 후 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 계약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 의를 받는다.
- ※ 업무의 성격상 2팀장 이상 관련이 있는 건은 담 당팀장 모두의 합의를 받은 이후 합의대상금액에 따른 합의방법을 준수하여 과장 또는 국장의 합 의를 받는다.
- ※ 재정합의 대상 제외: 추정가격 2백만원 이하의 공 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부서 자체 일반지출)

순천시 규칙 제979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2024년 4월 15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대장)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 행점 등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순천시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시장과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 다.

- 제4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10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 제5조(상품권 사용처)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 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 가 맹점으로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시장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 ② 제5조에 따라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③ 시장은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 가
  - 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한다.
-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가맹점은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 영업일 기준 2일 이내로 한다.

-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 ① 상품권 현금할인 구매를 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 은 할인구매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 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순천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조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상품 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2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제2조 관련)

인수일	바채	l번호	발행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 재	
[인구현	글 %	인모	를 % 메구	2 % D F			담당자	팀장	과 장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별지 제2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서(제3조 관련)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와 판매대행점 간에 상품권 판매·환전 등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발행한다.
-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순천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에 보관하며, 총괄 판매대행점에서 순천시 관내 판매대행점으로 배부한다.
  - 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을 월말 정산(순천시 관내 판매대행점 자료 취합)하여 매월 10일까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수불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판매할인율은 같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7일 전에 통보한다.
- 제7조(환전처) 상품권의 환전은 총괄 판매대행점과 순천시 관내 판매대행 점에서 하다.
- 제8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환전대행 수수료는 판매·환전금액의 각 ( )%로 한다.
  - ② 수수료 지급률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 제9조(상품권의 폐기) 환전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이 폐기한다.
- 제10조(상품권 위·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 무를 다하였으나 대금지급시 위조·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상호 협의하여 처 리한다.
- 제11조(의무 및 배상) 순천시와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 )통을 작성하여 순천시와 판매대행점이

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상품권 발행인 순 천 시 장

(서명)

총괄판매대행점

\_(서명)

판매대행점

\_(서명)

[별지 제3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제3조 관련)

※ 순천사랑상품권 인계인수 현황 : 년 월 일 발행분

권면금액	발행수량	발행금액	비고
계	×××만장	×××억원	
3천원권	×××만장	×××억원	
5천원권	×××만장	×××억원	
1만원권	×××만장	×××억원	
5만원권	×××만장	×××억원	

위와 같이 (

)에서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인수자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입회자 순천시 성명 : 직 (서명) [별지 제4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제4조 관련)

( 년 월분)

권종	인 수		판 매		환전		재 고	
전 중	일련번호	매수	일련번호	매수	일련번호	매수	일련번호	매수
계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순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직인)

[별지 제5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6조 관련)

접수	번호 :	;	접수일 :		발급	급일 :		처리기간 3일
	상 호					종 및 품 목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성	월 일 별	( 남	, 여 )
신청인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 (휴대	번호 :  폰 :		)
<u>ု</u> ပိ	사 업 장 소 재 지							
	주 소							
	거래통장 계좌번호							
	「순천사랑성 사랑상품권					기행규칙	╎」제6조제	1항에 따라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순천시장 귀하								
붙이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전통시장 노점상은 상인회장 확인서) 1부. 2.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 1부.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1부. (사업자 등록증 상 1년 이상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							

(뉫면)

###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별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순천사랑상품권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5년
환전대행기관	등록 및 환전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환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 신청서(제6조 관련)

 접수!	<u>번</u> 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성 명 (대표자)		생성	년월 약	_	-, 여)
	단체명			화번호 휴대폰 :		)
신 청 인	사 업 장 소 재 지		목	적	축제·행사( 농산물 등 편 기타(	
	취급품목		순	영기간		
	거래통장 계좌번호		,			
		F권 발행 및 운영 -권 임시 가맹점			_	제6조에 띠
			년 ·	월	일	
	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	<b>クラロフ</b>					
<u>_</u>	건기 8					
붙인	임서류 (	축제·행사 등에 : 축제·행사 등의 순천사랑상품권 :	주관기관	이나 담	당부서에서 빌	발급)
	임서류 (	축제·행사 등에 : 축제·행사 등의	주관기관	이나 담	당부서에서 빌	발급)

(뒷면)

#### 순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순천시는 순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순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순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별	순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	1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순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순천사랑상품권	순천사랑상품권 임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1년
환전대행기관	가맹점 등록 및 환전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순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 및 환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7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제6조 관련)

본인은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주로서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제1조(가맹점의 등록・변경・해지) ① 순천시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가맹점 등록 취소) 순천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개별가맹점에 등록한 경우
  -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5.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 6. 법인의 경우 본점의 소재지가 순천시 관내가 아닌 경우
  - 7. 제3조제2항 등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3조(상품권 취급제한 및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순천시장이 발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 2. 위조ㆍ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다.
  -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 ③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의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담배, 신간서적 등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4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순천사랑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 제6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할 때에는 별도 지정된 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 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년 월 일

위 확약자 상 호:

사업자 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지 제8호서식]

## 전통시장 노점상 확인서(제6조 관련)

- 전통시장 노점상
  - 주 소:
  - 성명:
  - 생년월일 : (남, 여)
  - 전화번호 :
  - 취급품목 :
  - 노점위치 :

위 전통시장 노점상은 ( ) 상인회 관할 회원임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확인자 ( ) 상인회장 (인)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제6조 관련)

-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남, 여)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순천사 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붙임 가맹점 준수사항 등 1부.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제1555호

### 순 천 시 보

2024. 4. 15(월)

(뒷면)

년 월 일	변경사항	담당자(인)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순천사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증(제6조 관련)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남, 여)
- 단체명:
- 소 재 지 :
- 목 적 : 축제·행사( ), 농산물 등 판매( ), 기타(
- 운영기간:
- 취급품목: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순천사 랑상품권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붙임 가맹점 준수사항 등 1부.

월 일 녆

순 천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

(가맹점 번호 :

 접수t	 버호 :	접수일 :		발급일 :		<u>大</u>	  리기간 3일
	_ <b> ·</b>						
	대 표 자			생 년 월 성	일 별	( 남,	여 )
신	상 호			사 업 등 록 번	자 호		
청 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거래통장 계좌번호						
신		변 경 전			변 경	후	
   천   차   항							
변경 사유							
		F권 발행 및 운		_	제6조에	따라	순천사랑
상품	권 가맹점	등록을 변경 선	신정합니디	<del>-</del>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순천시장 귀하						
붙임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붙임서류 2. 변경사항 증명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3. 그 밖에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12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제6조 관련)

(가맹점 번호 : 호)

			저스이 .		ньдог.			+1317171 20	— ЭІ
접수변	<u>1</u> 오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3일	<b>=</b>
	대 표	. 자			생 년 월 성	일 별	( 님	t, 여 )	
신	상	ই			전화번호 (휴대폰			)	)
신청인	사 업 소 재								
	주	소							
해지 사유									
			F권 발행 및 운약 등록을 해지 신			제6조에	따근	<b>ት</b> 순천사 <sup>다</sup>	_ 랑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순 <sup>;</sup>	천시기	<b>장</b>	귀하						
붙임	붙임서류 가맹점 등록증 원본.								

[별지 제13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제7조 관련)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 고		
계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위:	와 같이 순천사랑상품	권 환전을 청구합니다	ł.		
[청 구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	구주명		
순 천 시 장	귀하				
# ## ## ## ## ## ## ## ## ## ## ## ## #					
순	천사랑상품권 환	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	수량(매)	금액(천원)	비고		
계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별지 제14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폐기조서(제8조 관련)

○ 폐기대상 기간 : ~

권면금액	매 수	폐기방법	비고
계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환전된 순천사랑상품권을 위와 같이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인자 ( ) : 직 성 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개인) (제9조 관련)

순천사랑상품권 구매시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카드 지참) ※최초 1회에 한함				
구매금액				원
권 종	□ 3천원권 □ 5천원권 □ 1만원권 □ 5만원권		0	<u>H</u> H
		지.이요.제고		<u>'''</u>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현금구매 할인(%), 한도관리, 부정유통관리  * 구매한도 : 상품권 액면 기준 월 50만원, 연600만원(종이 및 모바일 합산)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금액 등  3.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구매 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상품권을 판매하는 순천시 관내 금융기관, 한국조폐공사, 순천시청  5.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는 상품권할인구매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할인구매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융기관 및 상품권 구매금액협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	합산)를 위해 해당 금			
순천시랑상품권 환불 시 판매 있으며, 상품권 권종간의 교환	•		) 구매자 본인만 요	<b>청할 수</b> □ 예 □ 아니오
- 동의할 경우 '예'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가 불가함) - 현금할인구매 한도(지류 및 모바일상품권 합산)가 초과될 경우, 구매가 제한됩니다.				
	20 년	월	일	
		구 매 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년 :	(서명 또는 인) 월 일
순천시장 귀	ōŀ			

※ 신분증을 지참한 만19세 이상 본인에게 판매 가능하며, 대리구매는 불가합니다.

※ 확인서류(본인확인 철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별지 제16호 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법인·단체)(제9조 관련)

법인·단체명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장전화번호		
법인주소		구매목적		
구매금액			원	
	□ 3천원권		1 <u>H</u>	
권 종	□ 5천원권		<u>1H</u>	
6 0	□ 1만원권		<u> </u>	
	□ 5만원권		<u> </u>	
	 개인정보의 수[	 딟·이용·제공 동의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현금구매 할인(%), 한도관리, 부정유통관리 * 할인구매한도 : 상품권 액면 기준 월 1천만원 이내(종이 및 모바일 합산)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금액 등 3.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구매 시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상품권을 판매하는 순천시 관내 금융기관, 한국조폐공사, 순천시청 5.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는 상품권할인구매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할인구매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순천사랑상품권 현금할인구매(판매대행 금 □ 예				
	매금액합산)를 위해 해당 금을 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니오	
	시 판매당일(구매한 금융기관 의 교환은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b>블인만 요청할 수</b> □ 예 □ 아니오	
	H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류 및 모바일상품권 합산)가 초		<b>의하지 않을 경우 구매가 불가함)</b> 립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법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			
1. 대표자 구매시 : 대표자신분증,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대리인 구매시 : 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뒷면), 대리인(방문자) 신분증 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 : 공문(용도,위임내용 기재),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방문자신분증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은 할인율 적용 및 구매한도제한이 없음.				

세1000호		ᄑ	신	<b>^</b>	工		2024.	4. 13	기 걸
								(	뒷 면
	4	위임장(유	위임 신	청시0	네만 작성)				
순천사랑상품	권 구매에 대해 다음과	바 같이 위	임합니다	<b>라</b> .			년	월	일
위임사유									
	법인명				(11ml rr = 01)	주민등록번호	<u>.</u>		
법인 신청인 (위임한 사람)	주소				(서명 또는 인)	연락처			
(11112 1117	법인 소재지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받은 사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			
	주소								

#### [별지 제17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사용규약(제9조 관련)

제1조(총칙) 순천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 제2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순천시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순천사 랑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사용업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4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상품권 가맹점(사용업소)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 제6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 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 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순천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8호서식]

## 순천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제11조 관련)

### 1. 순천사랑상품권 현황

(단위: 천원/매)

기머그에	발 행 내 역		판 미	내 역	보 유 내 역	
권면금액	매 수	발행액	매 수	판매액	매수	보유액
계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2. 순천사랑상품권 거래내역

(단위:원)

환전액	미환전액	이자발생액	통장잔액	비고

※ 붙임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명자료

위와 같이 순천사랑상품권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입회자
 직
 성명
 (인)

월

일

순천시 규칙 제98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개 규 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15일

순 천 시 장

붙임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 제1조(「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 제2조(「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 제목 "(문화재보존관리비)"를 "(국가유산보존관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중 "문화재보존관리비"를 각 각 "국가유산보존관리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 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관리비"를 "국가유산보존관리비"로 한 다.
  - 별지 제10호서식 제목 및 신청서 중 "문화재보존관리비"를 각각 "국가유산보존관리비"로 한다.
  - 별지 제11호서식 제목 중 "문화재보존관리비"를 각각 "국가유산보 존관리비"로 한다.
- 제3조(「순천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순천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근현대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국가지정 (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장소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제1조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 제2조「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문화재보존관리비) ① 조	제11조(국가유산보존관리비) ① -
례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른 <u>문</u>	<u>국가</u>
<u>화재보존관리비</u> 는 다음 각 호의	<u>유산보존관리비</u>
어느 하나에 해당된 자로서, 세대	
당 연 1회 지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지급 기준일 현재 낙안읍성 내	1의2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대주	
로서, 해당 가옥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계속해서 3년	
이상이며, 임차 가옥을 성실하게	
관리한 자, 이 경우 <b>문화재보존관리비</b>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의 10% 범위에서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	②
는 자가 질병치료, 직장 등의 사정	
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가옥을 비워둔 채 거주하지 않거	
나 낙안읍성 이외 다른 곳에서 생	
활하면서 부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옥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실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	
로 간주하고 <b>문화재보존관리비</b> 를	<u>국가유산보존관리비</u> -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치료	③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u>문화</u>	<u>국가</u>
<u>재보존관리비</u> 를 지급할 수 있다.	유산보존관리비
이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b>문화재보존관리비</b> 를 지급받고	④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재보존관리비 지급신청서를	
매년 1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문화재보존관리비를	⑤ <u>국가유산보존관리비</u>
지급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지급대상자 명부에 그 명단을 등재	

개 혅 했 정 아 •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보존관리비는 전년도 11 ⑥ 국가유산보존관리비는 전년도 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 지 지급대상자의 문화재 보존관리 실 까지 지급대상자의 국가유산----태를 수시 조사한 결과에 의해 11월 1 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액 사 정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⑦ 문화재보존관리비 지급대상자 | ⑦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의 가옥소유 여부 확인은 각종 공 부에 의해 하되, 공부에 의한 확인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옥 소재지 관할 이장 1명과 낙안읍성에서 10 년 이상 거주한 자 1명 이상(이하 '보증인 등'이라 한다)의 인우보증 등의 방법에 의해 할 수 있다. ⑧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 ⑧ ----- 국가 재보존관리비를 지급받았다고 인 유산보존관리비 를 지급받았다고 정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인정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 회수하고 그 수혜자와 보증인 등에 를 회수하고 그 수혜자와 보증인 대하여는 2년간 문화재보존관리 등에 대하여는 2년간 국가유산보 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존관리비-----. ⑨ 문화재보존관리비 지급대상 ⑨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대 가옥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史 상 가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

蹟) 제302호로 지정된 가옥으로

하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학자금) ① 조례 제23조	제12조(학자금) ①
제1항 제8호에 따른 학자금은 제1	
1조 제1항에 따른 <b>문화재보존관</b>	국가유산보존
<u>리비</u>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직계	관리비
비속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	
한다. 단, 낙안읍성과 주차장 등	
그 부속시설 내에서 노점상, 불법	
상품진열 또는 불법 영업행위 등	
을 행한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H남구] 레10층 11시]	[ਸ਼ੀੜ] ਸੀ]10 ਨੇ ਮੋਨੀ]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u>문화재보존관리비</u> 지급 신청서(규칙 제11조)	<u>국가유산보존관리비</u> 지급 신청서(규칙 제11조)
1. 지급신청대상가옥	1. 지급신청대상가옥
- 소재지 :	- 소재지 :
- 소유자 : 생년월일 :	- 소유자 : 생년월일 :
2. 신 청 인	2. 신 청 인
- 주 소 연락처 :	- 주 소 연락처 :
- 성 명 : 생년월일 :	- 성 명: 생년월일:
- 거주형태 : 자가( ), 임차( ), 기타( ) ※ 기타의 경우 소유자와 관계 : 부모( ), 배우자( ),	- 거주형태 : 자가( ), 임차( ), 기타( ) ※ 기타의 경우 소유자와 관계 : 부모( ), 배우자( ),
자녀( ), 형제자매( )	자녀( ), 형제자매( )
3. 가족사항	3. 가족사항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관계 직업비고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관계 직업비고
4. 계좌번호 :	4. 계좌번호 :
위와 같이 <b>문화재보존관리비</b> 지급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b>국가유산보존관리비</b> 지급을 신청합니다.
14 01 01	1
년 월 일	년 월 익
년 결 일 신청인 주소 :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현 행	개 정 안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u>문화재보존관리비</u> 지급대상자 명부 (규칙 제11조)	국가유산보존관리비 지급대상자 명부 (규칙 제11조)
번호 주소 세대주 생년월일(성별) 지급액 계좌번호 비고	번호 주소 세대주 생년월일(성별) 지급액 계좌번호 비고

# 제3조 「순천시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옥외영업 적용대상) 시장은	제4조(옥외영업 적용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재보호법 제36조, 제56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 제2항 국가지정(등록)문	에 관한 법률」제36조, 「근
화재현상 변경허가를 받은	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u>장소</u>	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
	변경 허가를 받은 장소

순천시 규칙 제981호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15일

순 천 시 장

붙임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낙안읍성"을 "순천 낙안읍성"으로 한다.

- 제1조 중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 낙안읍 성 관리 운영 조례, "로 한다.
- 제2조제1항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낙안읍성"을 "순천 낙안읍성(이하 "낙안읍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16호에서 "기타"를 "별표 3 제25호에서 "그 밖에"로. "사람"이라 함은"을 "사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매년 1월 1일, 설날 당일, 정월대보름행사일, 추석날 당일, 순천시장"을 "순청시장"으로 한다.
- 제12조제1항제1호 중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개인권(B)"란을 "단체권(B)"란으로, "읍성장"란을 "소 장"란으로. "어른"란을 각각 "성인"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중 "읍성장"란을 "소장"란으로, "어른"란을 "성인"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읍성장"란을 "소장"란으로, "어른"란을 "성인"란으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개 정 행 아 혅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시행규칙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제1조(목적) -----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이하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의 징수등) ① 조례 제2조(관람료의 징수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 는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이 관람 권을 판매, 징수하고 관람료 출납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부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 관리에 관한 규칙 | 에서 정한 관한 훈령 | -----현금 출납부로 하며, 관람료 징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낙안읍** ② ----- 순천 낙 성에 비치된 금고에 일시에 보관 안읍성(이하"낙안읍성"이라 한 하거나 은행에 예탁한다. 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무료관람의 범위) 조례 제9 제4조(무료관람의 범위) -- 별표 3 조제16호에서 "기타 시장이 필요 | 제2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 하다고 인정하는 <u>사람"이라 함은</u> 요하다고 인정하는 <u>사람"이란</u> --

현 행	개 정 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을 말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매년 1월 1일, 설날 당일, 정월</u>	3. <u>순천시장</u>
대보름행사일, 추석날 당일, 순	
<u>천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기간 중 행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제12조(학자금) ① 조례 제23조 제	제12조(학자금) ①
1항 제8호에 따른 학자금은 제11	
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보존관리	
비 수급자격이 있는 자의 직계비	
속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	
다. 단, 낙안읍성과 주차장 등 그	
부속시설 내에서 노점상, 불법 상	
품진열 또는 불법 영업행위 등을	
행한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u>중·고등학생</u> 에 대하여는 공납	1. <u>고등학생</u>
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	
금에 한함) 전액을 지원하되 타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관람료 징수대장(규칙 제2조)	관람료 징수대장(규칙 제2조)

# 함	<u> </u>	
## 전수 합계 ## 전 점 인 대장(규칙 제3조)  ## 관련 검인 대장(교리 제3조)  ## 관련 검진 제3조)  ## 관련 검인 대장(교리 제3조)  ## 관련 검인 대장(교리 제3조)  ## 관련	 현 행	개 정 안
변호 일은 (A+B) 소계 의료 청소년 이란 (B) 성명 인 비고 전	3d 당당 월일 (A+B) 소계 어른 청소년 어린이 소계 어른 청소년 어린이	** 당 월일 (A+B) 소계성인 청소년 어린이 소계성인 청소년 어린이 보기성인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 함 로 수 불 대 전(규칙 제3조)  변 함 로 수 불 대 전(규칙 제3조)  변 함 일 요일  제 제 해 수 명 이 명이	일련 지수 합계 단체권 바. 유성 다다 번호월일(A+B) 소계 어른 청소년 어린 (B) 서명 이	일련 징수 합계 단체권 나 소자 다다 번호월일 (A+B) 소계 성의 청소년 어린 (B) 서명 이
	# 함 로 수 불 대 상(구축제3.8)  # 함 일 요일  # 함 된 요일  # 함 된 요일  # 하는 함 사용량 건간 함 사용 건강 가용 가용 건강 가용 가용 건강 가용	## 함 로 수 불 대 장(구의 제3초)  전 형 일 요일  제 대당 소관 경 제 제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고

순천시 고시 제2024-60호

# 순천 도시관리계획(구암C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순천 도시관리계획(구암C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5.

# 순 천 시 장

- 1. 순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다음
- 2. 관계 도서 및 도면: 게재 생략
- 3. 관계도서는 순천시청 도시계획과(061-749-6315)에 비치하고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 순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조서

① 구암C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え	Ę	변 적(n	1²)	최 초	비고
1.5	번 호		Ħ	િં	71	^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山土
변경	60	구 ? 지구단	남C지 위계	구 획구역	순천시 45번 <sup>ス</sup>	덕암동 ] 일원	26,272	감) 13.3	26,258.7	순천시 고시-206호 (2021.10.1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60	구암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변경 - 면적 : 26,272㎡ → 26,258.7㎡ 감) 13.3㎡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 변경

## 2.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 분		면 적(m²)	그 서비(여)	비고	
	↑ ゼ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미끄
	계	26,272	감)13.3	26,258.7	100.0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6,272	감)13.3	26,258.7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²)	비고
_	순천시 덕암동 45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26,258.7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 변경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규	모		_	연장	위	치	사용	주요	최초	_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9	15~16	보조 간선 도로	992 (118)	중로1-3 생목동28-83	대로1-2 연향동420-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39	12	집산 도로	317 (41)	대로1-2 연향동418-14	연향동1306-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460	10	국지 도로	104 (104)	중로2-9 덕암동80-5	중로3-39 덕암동1306-20	일반 도로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변경

		면적	₹(m²)		<u> </u>		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기정	변경	획지	위 치			면적(m²)		비고
		71'8	<u>セ</u> ⁄3	번호	7 1	^		변경	변경후	
				1	덕암동 45번지 약	l 원	24,610	감) 4	24,606	공동주택용지
_	A-1	26,272	26,258.7	2	중로3-39호, 소로1-460호		1,662	감) 9.3	1,652.7	도로용지

<sup>※</sup> 지적분할에 의한 면적 변경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	' 분	계 획 내 용
		용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제13호 부대시설, 제14호 복리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 30% 이하
		용적률	기정	• 230% 이하
			12/8	• 220% 이하
0	1-(1)	높이	(층수)	• 평균18층 이하
	)	刖	] え]	•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채광·통풍을 고려한 방향 배치 • 순천시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세부지침을 고려한 배치
		ठें	! 태	• 단지 내외 옹벽은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경석 및 식재 등 설치
				• 담장은 가로경관 향상을 위해 생울타리 담장 계획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지정 ※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건축선 적용대상에서 제외

<sup>※</sup> 순천시 고시 제2023-225호(2023. 11. 29.)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착오 기재에 따른 금회 정정

순천시 고시 제2024-61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신규·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15.

# 순 천 시 장

○ 도로명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백토재길 301외 8건(신규 8 / 폐지 1)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토지정보과(☎749-55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므로, 공공기관에서 민원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 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ıμΓ
디									철거추신축
도로명부여사유	자연지명 백토재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예전에 선창이 있다하여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자연마을 조례의 진입 노선으로 이를 인용 도로명 부여	연향택지 상가지역 노선으로 이를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20190415 해비치마을 인용	자연마을 육가산(남가,대가,서가,좌야,소안,대 안) 인용 도로명 부여	20221230 자연지명 소정이들을 인용하여 도로명 부여	자연마을 덕산과 해돋이 명소인 화표해변이 근접하여 이를 인용하여 도로명 부여	연향택지 상가지역 노선으로 이를 인용하여 순차적으로 도로명 부여
도로명 고시일	20070202	20090710	20070206	20100415		20170816		20240329	20100415
도로명주소 고시일	20240415	20240415	20240415	20240415	20240415	20240415	20240415	20240415	20240404
도로명주소	계월리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백토재 길 301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창길 53—53	전라남도 순천시 인월조례길 139-1 (인월동)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상가7길 28 (연향동)	지본리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해비치 1길 10	남가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가산로 149	갈평리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유평소 정이길 34-17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덕산별 빛길 125	
종전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sup>3</sup> 691~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95-8	전라남도 순천시 인월동 343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322—5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지본리 <sup>3</sup> 34-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740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갈평리 <sup>  </sup> 456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산70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상가7길 28 (연향동)
고시사유	건물번호 <sup>집</sup> 부여 6	= K1 0)	=	= K-1	= K <sub>1</sub> W	" 2	= K1 4	= K1 41	건물번호 <sup>7</sup> 폐지 ((
B		2	m	4	5	9	2	8	6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고시 제2024-2호

# 순천시 주암 월봉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순천시 주암 월봉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 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 별법 제38조 및 제39조』,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 같은법 시 행령 제82조』.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5일

#### 순 첫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주암 월봉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

### 2. 사업의 목적

○ 월봉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 지역적 여건과 특색 등 다 양한 방면에서 마을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마을 발 전을 모색함

##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월봉마을 일워

○ 면 적: 86.630 m²

- 가구 및 인구 : 18가구/32명
-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전난간 설치,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등

- 지역역량강화 : 문화복지교육, 국내선진지견학, 홍보물제작, 정보

화구축 등

- 4. 사업비: 500백만원(시비)
- 5.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3년간)
- 6. 사업의 효과
  - 월봉마을의 고유하고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마을을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마을 조성
- 7. 사업시행자 : 순천시장
- 8. 기타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농업정책과(061-749-8829)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공

순천시 공고 제2024-883호

#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 주민열람 공고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8-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 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 이 주민 열람을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5.

순 천 시 장

### 1.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도면 구분 표시 번호			ol =1		면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수도공급설비 (율촌 정·배수장)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108-5일원	_	증)15,719 (24,235)	15,719 (24,235)		

※ ( )의 면적은 순천시와 여수시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결정됨에 따라 전체 시설 결정 면적 표기

### 나.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A	수도공급설비 (율촌 정·배수장)	• 수도공급설비 신설 - 면적 : 15,719㎡	• 율촌제1산단 정·배수장 전면개량사업을 통하여 시설물 노후에 따른 기능 저하에 대비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

2. 관계도면: 게재생략

##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4. 4. 15. ~ 2024. 4. 29.(14일간)

• 열람장소 : 순천시청 도시계획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산단조성과

### 4. 주민의견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순천시 도시계획과에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도시계획과(☎061-749-6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공고 제2024-894호

## 해룡1 근린공원(19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전라남도고시 제2004-184호(2004.11.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되어 조성 완료된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893-2번지 해룡임대산단 내 근린공원(19호)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4. 4. 15.

# 순 천 시 장

1. 공원명 : 해룡1근린공원(19공원)

2. 위치 :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893-2번지 일원

**3.** 면적 : 23,855.0 m<sup>2</sup>

## 4. 조성계획 변경(안)

○ 주요(변경)내용 : 파크골프장 조성

< 변 경 >

- 기반시설 : 3,261.5m² → 1,386.0m² (감 1,875.5m²)

- 운동시설 : 1,432m² → 479.6m² (감 952.5m²)

- 휴양시설 : 32.0 m² → 48.0 m² (증 16.0 m²)

- 녹지시설 : 19,129.0 m² → 19,129.0 m² (증 1,912.4 m²)

#### < 신 설 >

- 운동시설 : 파크골프장(479.6m²)

- 편익시설 : 주차장(725.7m²). 화장실(86.2m²)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87.7m²)

5. 열람기간 : 2024. 4. 15. ~ 2024. 4. 28.(14일간)

6. **열람장소** : 순천시 체육산업과(061-749-6663) 및 공원녹지과 (061 - 749 - 8657)

7. 본 조성계획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조성계획에 대 한 자세한 사항은 체육산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방문 후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